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49호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규칙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1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금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표결의 선포 방법 규정 삭제 (안 제40조)

나.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안 제75조의2)

다. 지방의회 회의록 주민 공개 (안 제50조)

라.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 (안 제43조)

* 기록표결 :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마.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74조, 제84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발의의원의”를 “발의 의원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의의원이”를 “발의 의원이”로, “발의의원 1명”을 “발의 의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표 또는”을 “공표하거나”로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는 가결 되었음”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로 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6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

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5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9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제71조</u> 등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83조</u> ----- ----- ----- ----- ----- -----.</p>
<p>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63조제1항</u>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제72조</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회의의 비공개) <u>법 제65조 제1항</u> 단서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p> <p>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p>	<p>제17조(회의의 비공개) <u>법 제75조 제1항</u> ----- ----- ----- ----- -----.</p> <p>② -----</p>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

--- 발의 의원의 -----

----- . ----- 발의 의원이 --

----- 발의 의원 1명

③ -----

----- 공표하거나

제21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

----- 법 제77조제1항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기립이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

--- 때에는 가결되었음-----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장이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
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
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
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
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
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
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
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 ① ---- 「주민조례발안

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설>

법 제13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6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

<신 설>

<신 설>

제7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
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
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
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신 설>

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하려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
조-----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
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신 설>

제8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5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법 제98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99조제2항 -----

 -----.

④·⑤ (현행과 같음)